

# Research Ethics Guide

2015. 4.

# KIEP 연구윤리 매뉴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펴냄

구 성 주미화(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전문원)

책임편집 주미화(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전문원)

감 수 배선희(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장)

발 행 일 제1판 2015년 4월 23일

\* 본 책자를 사용하시면서 수정 또는 보충해야 할 내용을 발견하실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44-414-1178 / mhjoo@kiep.go.kr

# 차 례

# 제1장 유형별 연구윤리 위반사례

1.	표절	06
	1)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06
	2) 재인용 출처를 누락한 경우	80
	3) 인용된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80
	4) 출처를 부분적·한정적으로 표기한 경우	09
	5)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한 경우	09
2.	부당한 저자 표기	10
3.	중복게재	10
4.	기타	11
	1) 본문과 참고문헌 자료 불일치	11
	2) 부정확한 출처표기	12
5.	자료별 표기 예시	14
	1) 인터뷰 자료	14
	2) 협정문	14
	3) 국가정책/법률을 소개하는 장/절	15
	☆ 보고서 탈고 시 확인사항	16
제2징	↑ 연구윤리 Q&A	
1.	표기방식	18
	1) WP와 연구보고서의 집필 선후관계에 따른 출처표기	18
	2) 각주	
	3) 기관 보고서의 저자 표기	19
	4) 데이터베이스	19
	5) 데이터_요약분	20

# 차 례

	6)	데이터_다수 변수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하나의 표로 작성	20
	7)	데이터_유료 통계 데이터 등 직접 접근이 불가한 경우	20
	8)	박사학위 논문	21
	9)	번역문의 인용	21
	10)	연구원 출판물의 수정·보완 출판	21
	11)	인터뷰 자료	22
	12)	인터뷰(비공개) 자료	22
	13)	협정문(온라인)	22
	2. 기	타 의문사항	23
	1)	시의성이 중요한 원고작성에서 출처표기	23
	2)	연구보고서 중복투고 관련	23
	3)	위탁 연구과제의 학술지 투고 시 참고문헌 표기 여부	23
	4)	용역 목적에 따른 연구윤리 기준	24
	5)	용역연구의 표절 및 저작권 관련	24
	6)	PPT 자료 출처표기 대상 관련	24
부	록		
	1. 연	구회 연구윤리 평가결과(2011~13년도 보고서)	26
	☆ 20	15년 3월 연구회 평가규정 개정 내역	29
	2. 보	고서 집필단계별 연구윤리 점검·평가 절차	31
	3. 국	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개요	36
	4. 연	구회 연구윤리 평기규정(2015. 3. 6.)	38
	5 KII	EP 연구유리 규정	46



2015 KIEP 연구윤리 매뉴얼

# 제1장 유형별 연구윤리 위반사례

## 1. 표절

- 1)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 재인용 출처를 누락한 경우
- 3) 인용된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4) 출처를 부분적·한정적으로 표기한 경우
- 5)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한 경우
- 2. 부당한 저자 표기
- 3. 중복게재
- 4. 기타
  - 1) 본문과 참고문헌 자료 불일치 2) 부정확한 출처표기
- 5. 자료별 표기 예시
  - 1) 인터뷰 자료

- 2) 협정문
- 3) 국가정책/법률을 소개하는 장/절
- ☆ 보고서 탈고 시 확인사항

# 제**1**장

# 유형별 연구윤리 위반사례\*

## 1 표절

## 1)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유형 1-1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활용

- 교과서,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 ·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 예외사항: 2015. 3.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개정안 제9조 ②항 및 p. 9 '평가규정 개정 시 완화 · 추가되는 부분(2015 3)' 제9조 내용 참조

### 사례: 본문의 출처가 없는 경우(14년도 보고서 연구윤리 정밀검독본)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산업은 더욱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전망기관에 따르면 OO 문화산업은 2000~00년까지 연평균 OO%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OO은 OO%가 넘는 고속성 장을 거듭할 전망이다.

- △ 이 유형은 전형적인 표절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 정밀검독 후 보고서 발간 시 'KPMG(2014), p. 2'라고 출처를 표기하였음.
- ዾ코 본문과 각주에서 타인의 저작물 및 통계, 발표, 회의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직접인용을 하면서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혹은 부가 설명을 위한 각주에서 출처표기가 안 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 또한 학계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용어, 시건)일 수 있으나,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sup>\*</sup> 제1장의 주요 연구윤리 위반 유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4),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pp. 18~20에서 발췌, 각 사례는 KIEP 보고서에서 발췌.

## 사례: 표/그림에 출처가 없는 경우(14년도 보고서 교정지)

사업, 유통, 교육,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 커뮤니케이션, 금융, 환경, 운송 메시코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 사회, 오락 · 문화 칠레 커뮤니케이션, 관광 페루 유통, 관광 커뮤니케이션, 건설, 교육, 환경, 보건 - 사회, 운송 교육, 환경, 오락 · 문화 · 스포츠, 운송, 싱가포르 사업, 건설, 금융, 관광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션, 금융, 관광 유통, 교육, 환경, 보건 - 사회, 운송 베트남 유통, 환경, 관광 보건 - 사회, 운송 교육, 보건 · 사회, 운송 한국 사업, 커뮤니케이션, 관광 AR:V

- △ 모든 표와 그림, 글상자에는 자료(출처) 표기 필요: "자료: 저자명(연도), p. 00" 누락여부 확인
- △ 인터넷 자료는 구체적인 URL과 검색일을 표기해야 함(참고문헌 동일).
- △ 참고한 인터넷 자료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검색일을 표기해야 함(검색일이 같더라도 각각 표기).
- ▲ 연구진이 직접 작성한 결과물에는 "자료: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과 같은 표기 필요

### 유형 1-2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했지만, 출처 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사례: 말바꿔쓰기/요약에 출처가 없는 경우(13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 4) WB 43

World Bank는 환경보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43개의 환경 친화적인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상품들(Climate Mitigation Goods)은 환경상품에 대한 교역장 벽을 완화 및 철폐하기 위한 각종 국제적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통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상품으로 인식되는 환경상품의 수출은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후완화 상품들의 자유화에 따른 이득이 이러한 국가들에게만 귀속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 5) Other(ICTSD)

ICTSD는 주요한 기후완화 기술 및 관련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류되었으며, ICTSD와

△ 보고서의 환경상품에 대해 p, 00 각주에서 출처를 표기하였으나, pp. 00~00에서는 각 리스트에 포함되는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ㅇㅇㅇ 외(2013)의 문헌을 순서만 바꾸어 그대로 가져다 쓰고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음.

#### 유형 1-3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였 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사례: 번역문에 출처가 없는 경우(13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미국은 1980년 자유로운 심해저 개발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인 「심해저광물자원법 (DSHMRA: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을 제정해 미국 기업에 대해 심해저의 광물자원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UN 해양법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나 일부에만 표기하였음.
- △ 저지는 보고서에서 원문을 산발적으로 번역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번역을 하였음 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나타남.

## 2) 재인용 출처를 누락한 경우

유형: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기한 경우

사례: 2차 문헌 표절: 재인용(13년도 보고서 교정지)
[본문] 연가스 눙 원자재가 아닌 국무편드의 자산 대비로는 69% 수순이다.
[참고문헌]
조윤선. 2013. [ 6월 美국채 보유량 전달보다 215억 달러 줄어」. 『뉴스핌』(8월 16일).

- △ 조윤선 기자 가 "뉴스핌" 이라는 신문사에 위 제목의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임. 21세기 경제보도(2013. 8, 16) 가 원자료, "뉴스핌" 이 재인용한 자료임. 원자료와 재인용 기사 날짜 확인이 필요하며, 참고문헌에 원자료 기사도 추가되어야 함. → 21세기 경제보도(2013. 8, 16), 재인용: 조윤선(2013. 8, 16) or 「기사명」(연월일)
- △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표기한 경우도 해당

## 3) 인용된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유형: 양적·질적 주종관계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표기했지만 본인의 것이라고 인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가져온 경우

## 사례: 양적·질적 주종관계

표절 의심 부분:

김표절<sup>1)</sup>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도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건만. 오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산만 높다고 탓하는구나.

1) 양사언(연도 미상) 시조를 참고하여 작성.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양사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 고시조를 참고하여 작성했다고 출처를 밝혔지만, 저자의 창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 4) 출처를 부분적·한정적으로 표기한 경우

유형: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사례: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13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한 국가의 거시경제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0 또한 재정 측면에서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성장 둔화가 겹쳐질 경우 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56) 김양희 외(2010), p. 38.

🖾 보고서의 p, 00 마지막 줄에서 p, 00 12줄까지 김양희 외(2010) 보고서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 나. 처음 3줄만 출처를 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음.

## 5) 출처를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한 경우

유형: 포괄적 · 개괄적 출처표기 이용하 타이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저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각각의 부분에 대한 출처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 또는 절 제목 부분에만 특정 저작물을 인용 또는 참조했다고 표기하는 경우

- 예외사항: 2015. 3.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개정안 제11조 ②항 및 p. 9 '평가규정 개정 시 완화·추가되는 부분(2015, 3)'제11조 내용 참조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예) 1문단: 출처표기	예) 제2장은 OOO(2014)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
2~4문단: 출처 미표기	성함.
🕰 총 4문단을 인용하면서 1문단에만 출처표기를	🕰 타인의 저작물 상당 <del>부분(</del> 전부/일부)을 그대로
한 경우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모두 출	가져다 쓸 경우 장 또는 절 제목에 출처표기한 경
처표기를 해야 함.	우로, 각각의 부분에 대한 출처 명시를 해야 함.

## 2. 부당한 저자 표기

유형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 사례: 부당한 저자 표기

김원로 · 이연구 · 박유리 · 최준수

- 🖾 보고서의 실제 집필진은 이연구, 박윤리, 최준수 3명인데, 김원로를 저자에 포함시킴.
- △ 보고서의 실제 집필진은 5명인데, 정조교를 저자에서 제외시킴.

# 3. 중복게재

유형 1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마치 새로운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

#### 사례: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중복게재(12년도 보고서 연구회 평가)

미국의 석유 및 수입물질에 대한 내국세 사건에서 패널은 내국민대우조항이 경쟁관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현재의 무역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역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예견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중략 … 내국민대우의무는 무역량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량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회원국의 국내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또는 거의 없더라도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인 논문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음.
- ▲ 출처를 표기하였으나,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분만 출처를 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락하지 않았는지 주의가 필요함

# 4 기타

- 1) 본문과 참고문헌 자료 불일치
- 🜔 표기 오류 본문과 참고문헌의 표기 차이

## 사례: 단독/3인 이하 저자&4인 이상 저자 표기(14년도 보고서 교정지)

[본문]

"○○○(2012)은 ○국 기업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현황, 특히 중국의 혁신 기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도출하였다."

#### [참고문헌]

○○○ 외. 2012. ○○○○. 연구보고서 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참고문헌에 따르면 본문은 ○○○ 외(2012)로, 참고문헌에는 모든 저자명이 기술되어야 함.
- 🖎 만약 참고문헌에 같은 연도의 4인 저자 자료와 5인 저자 자료가 있을 경우. a/b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 표기 오류 참고문헌의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음.



- △ 본문 표 database 자료의 기관명 등을 알 수 없으며, 검색일이 누락됨.
- 본문 표/그림의 자료가 참고문헌에 누락됨.

2012. Table No pp 35-36

제은행) 빔폘콤	통신	아르메니아, 아르멘델	600	2006	인수, 확대	-
060	86		000	2000	21, 44	-
알파방크	은행업	우크라이나, 알파방크(우크라이나)	577	2001	인수, 확대	

△ 본문 내주/표·그림/각주 등에서 언급된 문헌은 모두 참고문헌에 표기되어야 함.

## 본문 각주의 자료가 참고문헌에 누락됨.

사례: 본문 각주 자료의 참고문헌 누락(14년도 보고서 교정자)

96) 아세안 사무국(The ASEAN Secretariat)에 따르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은 2008년 492.9억 달러, 2009년 469억 달러, 2010년 922.8억 달러, 2011년 975.4억 달러, 2012년 1,42.8억 달러, 2013년 122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대아세안 FDI는 연 19.9%씩 성장했다.(집작일: 2014년 10월 30월)

- △ 본문에 언급된 자료는 모두 참고문헌에 표기되어야 함.
- △ 온라인 자료로 추정되므로 URL 기록 등 자료 형태 표기가 수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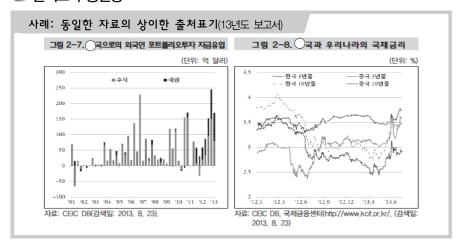
## ◉ 참고문헌의 자료가 본문에 누락됨.

사례: 참고문헌의 본문 누락(14년도 보고서 교정지) 최창곤. 2010. 「노동시장구조와 고용탄력성: 경제성장과 고용」. 응용경제 12(3). pp. 83~105.

- ▲ 본문의 자료가 참고문헌에 누락됨: 참고문헌에 표기된 모든 문헌은 본문에 언급되어야 함.
- ዾ 본문에서 참고하지 않았지만 관련/심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 제시할 경우 관련자료 목록 으로 정리해야 함.

## 2) 부정확한 출처표기

# 🕑 출처표기 통일성



△ 양쪽 그림의 자료출처 표기방식이 통일되어야 함.

##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확인이 필요함.

14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HSBC	2012, 03, 09	1,00	2012, 01, 05
15	국민연금공단	씨티은행	2012, 03, 09	1,00	2012, 01, 05
16	하나대투증권	씨티은행	2013, 02, 28	1,00	2012, 03, 29
17	동부자산 <del>운용</del>	건설은행	2013, 05, 03	0,70	2012, 04, 20
18	현대증권	건설은행			2013. 03. 22
19	하나UBS자산운용	IIIEIOM			0040 40 04
다료: (검사	하다(DESRC), htt 중권관리감독위원회(CSRC), htt 개일: 2013, 11, 27), 인자료]	씨티은행 p://www.csrc.g	l ov.cn/; 국가와	환관리국(SAFE), http:	2013, 10, 31 //www.sale.gov.cn/
로: (검색 [온라인 국가 htt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 http 생일: 2013, 11, 27).	cdministration 검색일 <mark>: 201:</mark> Bank of Chir	of Foreign Exc 3. 9. 2, 2013. 1: a). http://www.p	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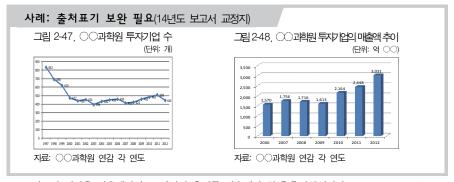
- △ 본문에는 검색일이 11/27이나. 참고문헌에는 9/2과 11/9로 표기됨.
- △ 두 개의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이 같더라도, 자료가 2개이므로 검색일도 2개 필요함.

## 📵 서지시항 보완 필요

## 사례: 상세 출처 표기 필요(14년도 보고서 교정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bigcirc\bigcirc\bigcirc$ 의 <u>'특허실시허가계약(专利实施许可合同) 데이터'</u>를 기반으로  $\bigcirc\bigcirc$  대학과  $\bigcirc\bigcirc$ 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특허실시허가계약 데이터'의 출처가 '○○지식산권국, www.sipo.gov.cn(검색일: 0000, 00, 00)'이 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음.



- △ 연도별 연감을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출처를 기술해야 함(○○과학원연감, 1997; 1998; …).
- 🖾 참고문헌에 연도별 연감이 모두 표기되지 않고, 2013년 연감만 기술됨. 각 연도 연감 표기가 필요함.

## 사례: 출처표기 보완 필요(14년도 보고서 교정지)

표 3-4. 북극이사회(AC) 위킹그룹 현황

워킹그룹	출범 시기	목적 및 활동	의장국 (2014년 8월 현재)
북극모니터링평가프 로그램(AMAP)	1991	북극 오염문제 모니터링, 평가, 예방	멘마크
11:0 - B (OD 11 O)		אור סישרו ויידור ווייסי ורווייס טו ב	
북극환경오염물질조 치프로그램(ACAP)	2006	북극이사회 환경오염 관리 대응 활동 수행 환경오염물질 배출 제한감축을 위한 노력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 모색	핀란드

<sup>\*</sup>출처: Arctic Council

- △ 신뢰성을 높이고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출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함.
- ▲ 출처가 'Arctic Council' 로 표기되었으나 이 자료가 인터넷 자료인지, 단행본인지, 혹은 논문인지 그 유형을 알 수 없음. 자료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5. 자료별 표기 예시

## 1) 인터뷰 자료

## 예시

135) Justo Diaz ICEUABJO 교육연구소 연구원 인터뷰(2014년 8월 29일, 멕시코 오악사카).

△ 인터뷰 자료의 출처는 인터뷰 대상, 날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2) 협정문

# 예시 [본문] 22. 제도 규정 및 분정 해결 23. 예외 여. 최종 조항 자료: 한 · 미 FTA 협정문: 한 · EU FT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참고문헌] [법률 및 협정문] 「행정절차법」 한 · 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글본」 한 · EU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글본」

# 

- ዾ 온라인 협정문만 참고하고 혼동될 만한 문헌자료가 없을 경우 본문에 간단히 출처표기한 후 참고문헌에 "협정문" 자료를 분류하여 상세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 3) 국가정책/법률을 소개하는 장/절

#### 사례: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불가피한 경우(14년도 보고서 교정지)

30) 제3장은 각 항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rope 2020, 산업정책 4건, 산업경쟁력 지원 정책 3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저 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되었으나, 내용은 저자를 포함한 제3자의 연구 내용이 아닌 정책 문건(1차 문헌)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35)

EU 집행위원회는 7대 의제 및 16개 세부과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디 지털 어젠더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어젠더가 유럽을 스 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3-3 참고)

####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36)

에너지, 교통, 기후변화, 산업, 상품, 농림수산업, 생물다양성 및 지역정 책 등 EU 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 용이다. 즉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일련의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sup>35)</sup> European Commission(2010a).

<sup>36)</sup> European Commission(2011a).

<sup>▲</sup> 보고서의 한 장에 국가정책이나 법률을 담았고 저자가 임의로 내용을 가공하거나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장 시작 부분에 각주 30과 같이 간단히 소견을 밝히고, 각 소제목마다 출처를 표기할 수 있음.

# ☆ 보고서 탈고 시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영문 저자명 표기법	- [본문] 성만 기입 (2인) Benz and Furst(2002) (3인) Mankiw, Romer, and Weil(1992) (4인 이상) Michael et al.(2012) - [참고문헌] 맨 앞 저자는 성, 이름, 이하 저자는 이름 성의 순서 (2인) Benz, Arthus and Dietrich Furst, 2002 (3인) Mankiw, N. Gregory,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1992 (4인) Kumhof, Michael, Claire Lebarz, Romain Ranciere, Alexander W. Richter, and Nathaniel A. Throckmorton, 2012
ibid, op. cit. 사용법	<ul> <li>'앞의 책'을 기록할 경우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료명을 기입해야 함.</li> <li>감대외, 앞의 책, p. 00. / Atkinson, op. cit., p. 00.</li> <li>cf. 위의 책, p. 00 / Ibid., p. 00.</li> </ul>
외, et al. 사용법	- [본문 각주와 내주] 4명 이상 저자일 때 '외', 'et al.' 사용 - [참고문헌] 모든 저자명 기입  [본문] 김대외 외(2014), p. ○○. 표기 오류! [참고문헌] 김대외 · 이경제 · 박정책. 2014. 『A』… 김대외 · 이경제 · 박정책 · 최연구. 2014. 『B』…  ① 동일 연도 자료 중 3인 저자와 4인 이상 저자를 본문에서 "김대외 외(2014)"로 표기할 경우 A와 B자료 간 혼란을 일으킴.



## 2015 KIEP 연구윤리 매뉴얼

# 제2장 연구윤리 Q&A

## 1. 표기방식

- 1) WP와 연구보고서의 집필 선후관계에 따른 출처표기
- 2) 각주
- 3) 기관 보고서의 저자 표기
- 4) 데이터베이스
- 5) 데이터 요약분
- 6) 데이터\_다수 변수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하나의 표로 작성
- 7) 데이터 유료 통계 데이터 등 직접 접근이 불가한 경우
- 8) 박사학위 논문
- 9) 번역문의 인용
- 10) 연구원 출판물의 수정·보완물 출판
- 11) 인터뷰 자료
- 12) 인터뷰(비공개) 자료
- 13) 협정문(온라인)
- 2. 기타 의문사항
  - 1) 시의성이 중요한 원고작성에서 출처표기
  - 2) 연구보고서 중복투고 관련
  - 3) 위탁 연구과제의 학술지 투고 시 참고문헌 표기 여부
  - 4) 용역 목적에 따른 연구윤리 기준
  - 5) 용역연구의 표절 및 저작권 관련
  - 6) PPT 자료 출처표기 대상 관련

# $M_{\Delta}$

# 연구윤리 Q&A\*

## 1. 표기방식

1) WP와 연구보고서의 집필 선후관계에 따른 출처표기



- 1) Working Paper를 발간하고 이후 연구보고서에 인용하는 경우와
- 2) 연구보고서 발간 후 WP를 발간하는 경우의 적절한 출처표기 방식은 무엇인지요?



- 1-1) WP와 연구보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완·발전 관계일 때: 연구보고서 앞부분(속표 지 뒷면 등 일정한 부분)에 연구보고서와 WP 발간관계를 표기
  - 예: 본 보고서는 WP "----"를 보완하여 집필함.
- 1-2) WP 일부가 보고서에 포함 또는 보고서 일부가 WP 내용일 때: 해당 부분의 장, 절 제목에 표기

예: 본 장은 WP "----"(pp. 00-00)를 보완한 것임.

- 연구회 박진백 전문위원(2015, 2, 16) 및 이인재 교수 답변 내용 정리
- 2) 연구보고서를 WP에 인용할 경우 "본 보고서는 김00(2015)에 근거하여 작성한 연구임."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연구회 박진백 전문위원 답변(2015, 2, 16)

## 2) 각주



다른 출처에서 가져왔지만 통념적인 fact나 역사적 fact, 정부의 정책 분야에 대한 기술에 일일이 각주를 달아야 하는지요?



통념적 fact는 평가심시자가 용인하지만, 개인이 외우기 어려울 민큼 수치가 많을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정책 Source 역시 출처를 표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세경과 같은 단기교제의 경우, academic value가 아니라 current issue에 대한 대국민경제홍보·교육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독지층이 다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정재식 서강대 교수 초청 원내교육 토론내용(2013, 9, 25)

<sup>\*</sup> KINIS 지식마당-Q&A-연구윤리 Q&A 발췌.

## 3) 기관 보고서의 저자 표기

기관 보고서의 경우에도 저자가 표기되어 있으면 개인 저술로 간주하여 저자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 예: a)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c, U.S. Sanctions on Burma. (October 19)
  - b) Martin, Michael F. 2012c. U.S. Sanctions on Burma.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ctober 19)
- 기관명이 저자가 되는 기관보고서와 달리 기관에 속한 연구자의 이름이 개인 저자로 기재되는 기관보고서는 그 연구를 실제로 수행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 업적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저자로 기재되는 기관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출처표기는 b)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 7)

## 4) 데이터베이스

Q

A

Q

A

World Bank에서 운영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경우 무엇을 적어 야 하는지요? 현재 후지만을 적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출처 정보를 밝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나 연도가 없는 웹 기반 DB의 경우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간행물 발간의 주체인 World Bank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가 World Bank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만으로 출처를 표기하면 불충분한 정보가 됩니다.

인용한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를 밝힐 때는 독지들에게 필요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인터넷 자료와 웹 기반 DB의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자. 편집자(만일 있다면)
- 자료의 제목(만일 웹사이트명과 다를 경우)
- 웹사이트명
- 웹사이트의 스폰서나 관련 단체 및 기관명
- 검색일
- URL 주소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 7)

## 5) 데이터 요약분

A

Q

보고서 작성 시 다른 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데이터가 3p가량 있을 경우 어떻게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요?

요약내용의 끝에 각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와 같이 언급하고, 각주도 달아서 "이하의 내용은 ~에서 인용하였다"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초청 원내교육 토론내용(2008. 9. 24)

## 6) 데이터 다수 변수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하나의 표로 작성

다수 변수(30개 이상 지역)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하나의 표로 작성할 경우, 참고한 통계연감이 너무 많고(30권 이상) 통계항목이 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예: 35개 연감×7개 지표=245개 페이지). 또한 이 경우, 페이지 표기 없이 통계연감만을 열거하더라도 출처내용이 10줄이넘게 됩니다(+활용하는 통계값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다시 찾아내는 것도 너무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작업…). 이렇게 다수의 통계를 활용한 표나 그림에 방대한 양의 출처표기가 필요한지, 통계연감을 밝히는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활용한 통계연감(연도)을 밝히되, 어떤 목적 또는 이유에 의해 통계연감의 여러 데이터나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자료라고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1, 19)

## 7) 데이터 유료 통계 데이터 등 직접 접근이 불가한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에 직접 접근이 불가할 경우(유료 데이터 등), 이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 등을 작성한 다른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보고서에 표 등으로 다시 활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문헌의 표를 똑같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이터 일부와 이를 재가공한 데이터를 함께 표로 작성할경우, 이 표에 대한 출처표기 방식이 궁금합니다.

다른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저자가 재가공하여 표로 제시할 경우 표준화된 표기 방법은 없지만, 활용한 보고서에 대한 출처를 표기한 후 여기에 있는데이터나 표를 참조한 것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자, 저작물명(출판지: 출판사, 연도), p. 00 표기 후 "——라는 목적을 위해 데이터 혹은 표를 재구성한 것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1, 19)

## 8) 박사학위 논문

Q

박사학위 논문의 참고문헌 표기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원내 기준이 궁금합니다.

 김용오. 2012. 「조인트 벤처에 관한 법적 연구」. 2012. 2. 박사학위논문. 고려 대학교.

A

김용오. 2012. 「조인트 벤처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월) - 배선희 출판팀장(2014. 3. 18)

## 9) 번역문의 인용

Q

영문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직접 인용을 하면 되지만,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 자기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인용표기를 어떤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직접 인용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영문자료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인용할 때는 직접 인용과 같이 인용부호("")나 인용단락 표기를 하고 출처표기를 하면 됩니다.

번역 후 자기 표현을 곁들여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한 경우는 간접 인용과 같이 인용한 부분의 마지막에 출처표기를 하면 됩니다.

번역 원문 그대로 활용하면서 중간중간 자신의 표현이 가미될 경우에는 자기의 표현이 아닌 원문 그대로의 부분에만 인용부호를 표기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1, 25)

## 10) 연구원 출판물의 수정 · 보완 출판

Q

연구원 출판물을 수정 · 보완하여 출판할 경우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수정보완 출판물이나 논문의 각주 또는 별도 표기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면 됩니다.

- 1. 이 연구는 정○○(2011)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2. 이 논문은 제1저자 강○○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요약하며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11-330-B00044).
- 3.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 『○○○』(2011)의 일부 내용을 발췌 하여 학술논문의 성격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논문임.
- 4. 이 논문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의 분석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관련 이론과 분석내용을 추가하여 새롭게 재작성한 내용임.
- 5. 이 논문은 KIEP에서(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 결과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2012)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배선희 출판팀장(2013, 6, 24)

## 11) 인터뷰 자료

Q

인터뷰 내용이 몇 단락 이상일 경우 단락(혹은 문장)마다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요?

A

인터뷰한 내용을 한 번에 모두 인용할 때는 인터뷰한 내용의 인용이 끝나는 마지막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몇 개로 나누어 사용할 때는 보고서를 쓰는 저자의 글(주장, 견해) 뒤에 관련 인터뷰 내용을 제시할 때마다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 인용법입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1. 19)

## 12) 인터뷰(비공개) 자료

Q

인터뷰 자료를 참고문헌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인터뷰 관계자의 실명이나 기업(기관)명(혹은 기업 이니셜)을 노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문헌에서 생략해도 되는지요?

A

실명을 표기할 수 없는 인터뷰 자료는 각주와 참고문헌에서 간략하게 '인터뷰 자료 (날짜)'로 표기하면 됩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1. 19)

## 13) 협정문(온라인)

온라인으로 참

온라인으로 참고한 협정문이나 법령 조문 등은 저작권이 없고, 일반적인 사실이며, 언제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데, 일일이 검색일을 달아야 하는지요? 또한 대표 사이트로 들어가면 상세 협정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a/b/c···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 URL을 모두 달아야 하는지요?

Q

예를 들면 본문 각주에는 "The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협정문 Appendix 11.A 2와 "The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협정문 Annex 14.3.D… 등으로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USTR, http://www.ustr.gov. 이 렇게 대표주소와 검색일을 한 번만 달아도 되지 않을지요? 세부 URL은 텍스트가 바뀔 수 있는 기사 등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만, 언제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협정 문의 경우 세부 URL과 검색일을 일일이 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협정문의 명칭만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고문헌에는 한 번만 표기하시고, 제정연도나 개정연도를 통하여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출처까지 표기하고자 하실 때는 가급적 책자 형태(혹은 PDF)나 협정문이 발표된 행사(컨퍼런스 등)를 출처로 하면 이후 출처가 변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CRE 연구윤리 정보센터(2014, 9, 18)

## 2. 기타 의문사항

## 1) 시의성이 중요한 원고작성에서 출처표기

신속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이 필요하거나 주독자가 정부인 보고서의 부피를 줄일 요량으로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연구결과물의 경우, 전문 학술지에 적용되는 표절 이나 중복게재 판단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적당

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기를 간단하게나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슈페이퍼와 같은 짧은 보고서가 후에 긴 보고서나 단행본으로 출판될 수도 있는데, 먼저 발표된 짧은 보고서에 출처표기가 생략됨으로써 후속 연구결과물에 연속적으로 출처표기가 누락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후에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3. 1. 7)

## 2) 연구보고서 중복투고 관련

A

A

KIEP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일부를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에 투고하고자 합니다.

연구보고서나 연구자료 등의 내용 일부를 활용하여 전문 학술지 등에 발표(게재)할 때는 이를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게재 여부는 학술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에서 판단합니다. 투고된 논문에 이전에 발표된 자료가 중복되거나 일부 내용이 겹침에도, 독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게재를 승인하기도 합니다.

연구보고서나 연구자료가 공식적인 출판물이 아닐 경우, 그리고 이 자료를 인지할수 있는 독자가 한정적일 경우, 보다 많은 독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할 경우, 거의 그대로 혹은 압축하여 전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경우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처를 밝혀주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2. 12. 20)

## 3) 위탁 연구과제의 학술지 투고 시 참고문헌 표기 여부

위탁수행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추후 학술지에 투고할 때, 논문의 title page에 acknowledge하는 것과 별도로, 참고문헌에도 본 과제를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커버 페이지에 본 학술지 투고 논문이 자신의 어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밝히고, 구체적인 서지사항에 대한 출처표기가 없다면 참고문헌에 밝혀야 합니다. 학술지 투고 내용에 기수행 연구결과물의 어떤 부분(내용)이 활용되었는지 각주 등을 통해서 언급될 것이고, 본문에 언급된 자료는 참고문헌에 반드시

그 출처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지사항(보고서 제목, 제출일자, 해당 페이지 등)이 커버 페이지에 기록되면 참고문헌에 이중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자문내용(2012, 12, 20)

## 4) 용역 목적에 따른 연구윤리 기준

용역 수행 시 세미나 또는 보고서 발간 요청이나 자료조사 수집 등의 경우 과거에는 필요한 부분만 출처표기를 했습니다. 용역마다 목적이 다를 수 있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자료들의 취합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이 갖고 있는 Intellectual Capital을 활용하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러한 연구 수행에도 연구윤리의 잣대를 대는 것이 옳은지요?

개별적 주를 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Source 활용', '정부보고서 format에 날짜 기록', '발주처의 요구에 맞춰 작성됨' 등 가능한 형태의 설명을 표기하면 됩니다. - 정재식 서강대 교수 초청 원내교육 토론내용(2013. 9. 25)

## 5) 용역연구의 표절 및 저작권 관련

A

A

A

정부의 요청·필요에 의한 용역연구의 경우에도 일반 보고서와 같이 표절이나 저 작권 문제가 적용되는지요?

학술지와 학술지 간의 문제는 윤리규정에서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으나,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나 용역연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다른 자료를 참고한 경우 기본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추세도 출처를 밝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초청 원내교육 토론내용(2008. 9. 24)

## 6) PPT 자료 출처표기 대상 관련

② 보고서 외 PPT 자료의 경우에도 출처표기가 필요한지요?

PPT 내용 중 저작자가 작성하지 않은 도표, 데이터 등의 출처는 표기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는 출처표기를 정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 김병일 한양대 교수 초청 원내교육 토론내용(2013, 5, 23)



# 2015 KIEP 연구윤리 매뉴얼

# 부록

- 1.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결과(2011~13년도 보고서)
- ☆ 2015년 3월 연구회 평가규정 개정 내역
- 2. 보고서 집필단계별 연구윤리 점검·평가 절차
- 3.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개요
- 4.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2015. 3.)
- 5. KIEP 연구윤리 규정(2015. 4. 9.)

# 1.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결과(2011~13년도 보고서)

# 1) 2011년도 보고서

보고서명	유형	건수	결과
보고서 A	표절 의심사례	1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보고서 B	표절 의심사례	2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H74 C	표절 의심사례	5	- 2차문헌 표절 의심사례
보고서 C	중복게재 의심사례	1	-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소계	표절 의심시례 (8건) 중복게재 의심시례 (1건)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3건 - 2차문헌 표절 의심사례: 5건 -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1건

주: 2012년 11월 연구회 평가.

# 2) 2012년도 보고서

보고서명	유형	건수	결과
보고서 A	표절 의심사례	1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보고서 B	표절 의심사례	2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НПЦ С	표절 의심사례	5	- 2차문헌 표절 의심사례
보고서 C	중복게재 의심사례	1	-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표절 의심사례 (8	- 3건)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3건
소계			- 2차문헌 표절 의심시례: 5건
	중복게재 의심사례	(1건)	-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1건

주: 2013년 11월 연구회 평가.

# 3) 2013년도 보고서

보고서명	유형	건수	세부유형에 따른 결과
보고서 A		해당 (	없음.
	표절 의심사례	1	-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보고서 B	기타	1	- 참고문헌란에는 서지사항이 있으나 본문에는 활용되지 않는 경우
보고서 C	기타	1	- 부정확한 출처표기
보고서 D	기타	3	- 본문에는 출처 인용 표기를 했지만, 참고문헌란에는 해당 자료의 서지시항이 없는 경우: 1건 - 참고문헌란에는 서지사항이 있으나 본문에는 활용되지 않는 경우: 1건 - 부정확한 출처표기: 1건
	표절 의심사례	3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1건 -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2건
보고서 E	기타	3	- 본문에는 출처 인용 표기를 했지만, 참고문헌란에는 해당 자료의 서지사항이 없는 경우: 1건 - 참고문헌란에는 서지사항이 있으나 본문에는 활용되지 않는 경우: 1건 - 부정확한 출처표기: 1건
	표절 의심사례	1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히는 경우
보고서 F	기타	2	- 참고문헌란에는 서지사항이 있으나 본문에는 활용되지 않는 경우: 1건 - 부정확한 출처표기: 1건
보고서 G		해당 (	없음.
	표절 의심사례	5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1건 -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4건
소계	기타	10	- 본문에는 출처 인용 표기를 했지만, 참고문헌란에는 해당 자료의 서지시항이 없는 경우, 2건 - 참고문헌란에는 서지시항이 있으나 본문에는 활용되지 않는 경우, 4건 - 부정확한 출처표기, 4건

주: 2015년 2월 연구회 평가.

# 4) 2011~13 종합평 비교

	미흡한 점	권고사항(제언)
2013 년도 보고서	<ul> <li>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참고한 모든 문한 중 일부만 출처표기</li> <li>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사례</li> <li>본문에는 출처표기를 하고 참고문헌에는 구체적인 서지사항 누락</li> <li>참고문헌에는 저작물을 제시했지만 본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사례</li> </ul>	<ul> <li>페이지, 참고문헌의 발행연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점검을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 권고</li> <li>연구위원뿐 아니라 연구원, 외부 연구진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에 유의할 필요</li> <li>지역연구의 특성상 해외 일차자료의 활용 시 관련 연구윤리규정 보완이나연구원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필요</li> </ul>
2012 년도 보고서	<ul> <li>타인의 외국어 저작물을 번역하여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 타인의 저작물 직접인용 시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참조'로 표기한 경우</li> <li>각주의 출처 중 페이지 잘못 기재 및 정확한 페이지 누락</li> <li>웹사이트 최종 방문일자 표기 미흡</li> <li>그림 · 표를 이용 시 원자료 출처 누락, 인용과 재인용 표기 구분 미흡</li> <li>본문 각주 자료 참고문헌 누락,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참고문헌이 존재</li> <li>출처표기 없이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li> </ul>	<ul> <li>보고서별 연구윤리 준수 차이가 심함. 연구기관 차원의 연구윤리 인식도 제고 교육 필요</li> <li>일반적 지식 및 확립된 시실에 대해타인이 기술한 노력에 대한 인정과존중의 의미로 출처표기하는 것이좋을 것 같음.</li> <li>동일한 보고서의 파트별 각주 출체표기 방법 상이. 일관성 유지 필요</li> </ul>
2011 년도 보고서	<ul> <li>○ 인용 시 원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복시한 사례</li> <li>○ 출처표기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빈번함.</li> <li>○ 중요한 피인용 논문의 참고문헌 미기재는 의도적인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li> <li>○ 선행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 짜깁기, 또는 개조식을 단순 서술형으로 비꾼 경우</li> <li>○ 출처를 밝히지 않고 2차 문헌 인용 내용을쓰고, 재인용 표기 없이 1차 문헌만 언급</li> <li>○ 동일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중 중복인용한부분이 다소 있음.</li> </ul>	<ul> <li>각주에 인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시 필요</li> <li>보고서 인용(자기논문 포함) 시 출처제시 후 원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에 대한 윤리규정 필요</li> <li>그래프나 표의 2차 표절 의심사례에대한 명확한 사례 제시 및 사정 필요</li> <li>타인의 저작물 직접인용 부호("")사용</li> <li>재인용 표기, 정확한 자료명이나 페이지 표기</li> </ul>

# ☆ 2015년 3월 연구회 평가규정 개정 내역

조문	완화되는 부분	비고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제정 2014. 4. 11.
	2. 선행연구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이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2015 '외국사례' 추가 제정 2014, 4, 11,
제9조 (표절)	3.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 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 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2015 신설
	4. 연치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 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2015 신설
	5.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2015 신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제정 2014. 4. 11.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제정 2014. 4. 11.
제11조	3.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 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 용하는 경우	제정 2014. 4. 11.
(중복 게재)	4.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15 신설
	5. 선행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사진이 어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한 경우	2015 신설
	6.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 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 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 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한 경우	2015 신설

조문	완화되는 부분	비고	
	7.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	2015 유사한 <del>→동</del> 일	
	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한 주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제정 2014, 4, 11,	
	8. 지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2015 용인타 적절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한 범위	
	활용하는 경우	제정 2014, 4, 11,	
제13조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	2015 비공개 내부자	
(출처	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료 정의: 연구기관/	
표기의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정 <del>부부</del> 처/발주기관	
대상)	있다.	제정 2014. 4. 11.	
조문	추가되는 부분	비고	
제12조	5.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2015 신설	
(출처	표기하여야 한다.	2010 년달	
표기와	6. 표, 그림, 시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	2015 신설	
인용)	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2010 12	

# 2. 보고서 집필단계별 연구윤리 점검 · 평가 절차

- 연구윤리규정 및 표절판정 세부기준 연구제안 연구추진 - 원고작성지침 제2장 「연구윤리와 인용」 ~연중심 - 연구윤리 Q&A 게시판 - 연구진 자체점검 -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참고문헌 표기 등 \* 연결심 결과보고 시 '연구윤리 자체점검표' 자체점검 연결심 (연구참여진 전원) 작성 첨부 \* 위탁연구는 '보고서 집필/편집 자체점검표' (위탁연구자용) 함께 첨부 - 표절검사 프로그램 활용(연구진) - **연구윤리 정밀점검 실시**(출판팀, 외부전문가) \* 표절검사 프로그램 활용, 연구진 자체점검 및 수정보완 후 평가요청서 작성 연구윤리 보고서 \* 평가요청 보고서 파일에 대해 출판팀 점검 평가요청 정밀점검(1주일)-연구진 수정보완(1주일)-수정보완내역 출판팀 확인-연조평 제출 \* 연구윤리점검결과 및 수정보완내역은 연조평위 평가에 활용 - 연구조정평가위원회 연구윤리평가 \* 연구윤리점검결과 및 수정보완내역 확인. 평가 연구윤리 보고서 \* 연구윤리평가결과 심각한 위반사항 발생 시 출판 불가 평가 평가 판정 가능 \*\* 윤리위원회 제소 - 연구진 최종점검

\* 위탁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전 상기절차 이행(평가결과에 따라 감액 혹은 계약해지 가능)

\* 출판의뢰서 작성 시 '집필/편집 자체점검표'

(연구참여진 전원) 첨부

최종점검

출판의뢰

# 1) 연결심 단계: 연구윤리 자체점검표(국/영문)

# KIEP 보고서 연구윤리 자체점검표

연구보고서명		점검일자		
연구진 성명	(서명)	참여 구분	책임	공동
212 66	(^18)	검어 1판		
소속 기관	(외부인시만 기록)	직위	(외부인사	만 기록)

구분	연번	연구윤리 내용		미준수
위조	1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기록하지 않았음.		
변조	2 연구 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음.			
	3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 번역 인용에 대한 출처를 적절하게 표기하였음.		
표절	4	인용한 부분을 정확하게 출처표기 함으로써, 포괄적/개괄적, 부분적/한정적 출 처 표기에 해당되지 않음.		
프걸	5	재인용(2차문헌 인용)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음.		
	6	인용된 부분의 질(質과 양量)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물과 피인용물이 주종 (主從)의 관계에 있지 않음.	·	·

# Ethics Review Checklist for KIEP Project & Report

Project / Report Title		Date of Review		
Name of Researchers	Signature	Authorship	Director / lead author	collaborator / co-author
Affiliated Organizations	Outside contributors only	Status	Outside contributors only	

Type	No.	Code detail	Followed	Not followed
falsification	1	I/We did not utilize nonexistent data or research results as part of the project / report		
fabrication	2	I/We did not manipulate the contents and results of research through the fabrication of materials, machines, and process of research or the arbitrary modification & elimination of data		
	3	I/We have indicated properly the origin of others' works, writings, ideas, and translations,		
plogiariom	4	I/We took every possible measure to prevent misconducts related to overly general, partial or limited citing by indicating the exact origin of cited parts.		
plagiarism	5	I/We properly indicated the re-citation of the first source in the second materials.		
	6	I/We set boundaries as to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ited parts and materials to avoid the danger that my/our citation be overvalued more than this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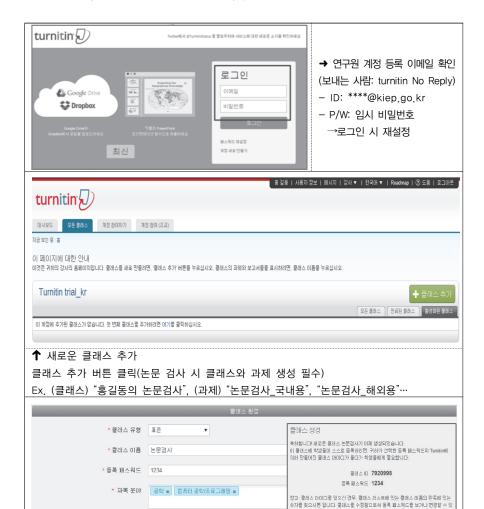
## 2) 평가요청 단계

- 표절검사 프로그램 'turnitin' 이용 샘플

\* 학생 소속 교육 기관 석사 ★ 박사 ★

클래스 시작일 03-4월-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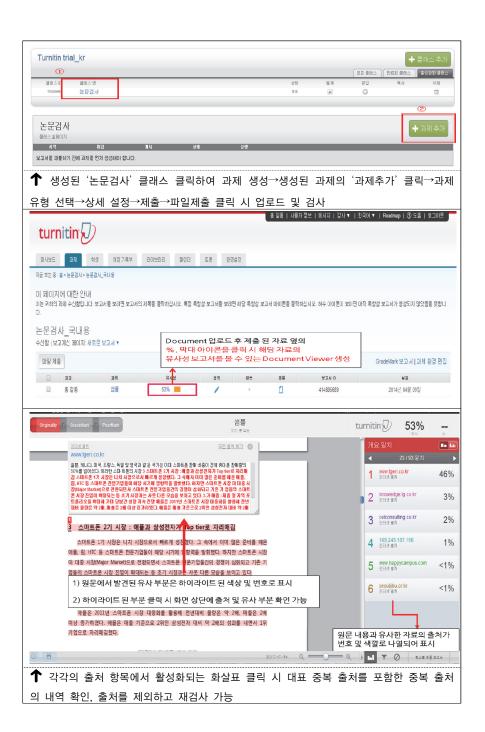
\* 클래스 종료일 2014년 10월 05일 🛗 (1)



↑ 클래스 유형: "표준" 선택 / 클래스 이름: (Ex. 홍길동의 논문검사) / 등록 패스워드: 4~12자 암호 기입 / 과목 분야: 해당 검사자료의 분야 또는 "기타" / 소속 교육기관: 석사 또는 박사 / 클래스 종료일: 6개월에서 1년 사이 설정→제출 버튼 클릭

2

클래스에 들어가서 과제를 만들려면 클래스명을 클릭하십시오.



# - 연구윤리 정밀검독 검토의견서 샘플

연구윤리 정밀검독 검토 결과

# □ 보고서명: ○○○○

검토 내용	확인수정 (O, X) * 미수정 시 사유 기록
1 P. 9 - 본 보고서에서의 중국 행정구역명 원문 및 한글 표기 대조표에서 표의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추후 보완
2 P. 21 각주 2, P. 22 그림 1-1 - 본문에는 참고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으나 참고문헌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陈吉宁 외, 2012, 흰발해연 해지역 중점산업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 베이징: 중국환경출판사. p1.)	0
3 P. 26 -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다음 문헌들이 참고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외(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2012), '환수도녹색경제권 발전계획과 평가' '산둥반도남색경제구계획과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 이상훈(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강승호(2006, 인천발전연구원), 중국 환발해 대도시권의 형성 및 경쟁력에 대한 연구	0
4 P. 34 표 2-2 - 표 자료의 출처 중 일부가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06년)	0
5 P. 38 표 2-5, P. 39 표 2-6 - 표 자료의 출처와 UPL이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0
6 P. 41 표 $2-7$ — 본문과 참고문헌에 표 자료의 출처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필자 작성
7 P. 50 - 본문 참고자료 중 징진지도시권지역종합계확 이 참고문헌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계획 미발표
8 P. 56 그림 2-3, P. 57 그림 2-4, P. 59 그림 2-5 - 그림의 출처 URL이 본문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참고문헌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0
9 P. 99 각주 29 - 본문 각주에 표기된 참고 페이지와 참고문헌에 기재된 페이지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0

# 3.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개요\*

## 1)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말함.



# 2)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 국책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국가의 Think Tank로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질적 · 독창적 정책대안 마련

훌륭한 정책대안은 연구보고서의 진실성과 독창성을 전제로 함. 연구윤리 준수가 담보되어야 함!

<sup>\* 2014</sup>년 11월 24일에 진행된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워크숍(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의 pdf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3) 연구윤리 준수의 필요성

정부의 고급 두뇌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모든 연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도 하락



연구자 자신과 소속된 연구기관, 국가의 발전까지 크게 저해할 수 있음.

# 4.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2015. 3. 6.)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창의 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 도의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연구자의 책무) ①연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평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연구자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야 한다.
- 제4조(연구기관의 책무) ①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유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회의 책무)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평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연구회는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③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
- 제6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 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 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 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 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 제2장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제7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압하는 경우 제8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3.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제9조(표절)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3.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 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4.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 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 5.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6.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 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3.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작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4.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 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5.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단,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11조(중복게재)** ①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1.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 3.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 에서 활용하는 경우
  -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 3.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4.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5.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6.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7.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 괄작·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8.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③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 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3장 연구보고서의 출처표기 등

- **제12조(출처표기와 인용)** ①연구보고서 작성 시 출처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출처표기는 원칙적으로 문장 단위로 한다.
  - 2. 출처표기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출처표기 방법은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달리할 수 있다.
  - 4.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 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 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키다.
  - 5.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 6. 표, 그림, 시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 3. 말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 제13조(출처표기의 대상) ①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 2.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 4. 이미지: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등
-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4조(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 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5.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 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4장 연구윤리 평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제15조(평가 절차 등)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평가 절차
  - 2.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
  - 3. 평가 결과의 활용
  - 4. 그 밖에 연구윤리 평가 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에는 평가 대상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연

- 구기관에게 소명 기회 부여, 피조사자의 권리 및 비밀 보호 등을 포함하여 공 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산출 방법에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의 심각성, 위반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활용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평가 결과의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1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①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한다.
  - ②연구화는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연구기관이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④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연구유리위위회

- 제17조(설치근거) 이사장은 제19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윤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총괄위원회 위원, 연구회 평가담당 부서의 실장, 관련 주무부처 4급 이상 담당공무원(이상 당연 직),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부재 시 기획평가위 원회 기획총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검토
  - 2.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변경 시 위원회의 추천없이 이사장이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선정한다.
  - 3. 평가대상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연구윤리 평가위원 3배수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 다만, 평가단 구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 변경 시 이사장이 위원회의 추천없이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 4.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개정안 검토
- 5. 이사회에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평가결과안 확정
- 6. 연구윤리 교육교재 검토
- 7. 연구회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제보에 의한 연구윤리 검증에 관하 사항
- 8. 그 밖에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위원회에 부여한 업무
-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임기와 동일하고, 그 외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제21조(회의) (1)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③간시는 연구윤리 평가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준비하고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직무상 필요한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연구를 수행한 내·외부 연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3조(수당)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보칙)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기본계획, 연구윤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 선정, 연구윤리 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사장이 매년 연구윤 리 평가 기본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5. KIEP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8.12.09 전문개정 2011.12.28 개정 2013.12.03 개정 2014.01.20 개정 2015.01.13 개정 2015.01.20 전문개정 2015.04.0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통한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 구과제의 경우 징계를 제외한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 판정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전예방 의무) ① 연구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보고서(연구자료 포함) 및 수탁보고서의 연구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의 1(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원장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평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회와 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야 한다.

③ 연구자는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신 및 타인의 표절 등 학문적 부정직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5조(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유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기관 구성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연구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 2.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 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 4.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 또는 관련기관에 알린 자를 말 한다.
- 5.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7.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8.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 제7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 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 제8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3.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제9조(표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 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3.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 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4.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 5.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6.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 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3.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4.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5.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단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11조(중복게재) ①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1.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 3.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 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 3.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4.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5.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6.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7.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 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8.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 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 ③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연구원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3장 연구보고서의 출처표기 등

**제12조(출처표기와 인용)** ① 연구보고서 작성 시 출처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칙적으로 출처표기는 문장 단위로 한다.
- 2. 출처표기의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원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연구보고서의 종류별로 출처표기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4.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킨다.
- 5.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 6.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 3. 말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 제 13조(출처 표기의 대상) ① 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 2.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 4. 이미지: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등
-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원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원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 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5.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 6.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 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 및 절차

제15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 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착수)** ① 연구윤리 위반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시작된다.

- 1. 제보
- 2. 인지

- ② 제보자는 기획조정실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 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장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수 과정 또는 감사를 통해 연구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기획조정실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8조에 해당하거나, 외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 제19조(판정 절차 등)

1. 표절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위원회에는 그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연구원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으로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전공자와 연

- 구원 내외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표절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2. 위원회는 판정에 참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예컨대 한국저작 권위원회) 또는 표절문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판정을 위한 심사절차 중에 표절의혹을 받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4.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표절의혹을 받는 연구자와 의혹을 제기한 기관 모두에 보장되어야 한다.
- 5. 연구원, 연구자, 위원회 등은 절차진행 중에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20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제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예비조사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제22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원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기획조정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조사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당해 조사 시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지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기피신청을 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 등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2.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구성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3. 제보자와 피조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제25조(본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 2. 제보내용의 요지 및 관련 연구부정행위 혐의
  -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 4. 인정되는 혐의사실
  - 5. 관련 증거
  - 6. 조사결과 및 제재 등 건의
  - 7. 조사위원 명단

제26조(판정) ① 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창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조정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위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연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제2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 1.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 2.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 3.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 4. 연구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5. 외부 연구자인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 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
- 6. 다음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7. 연구원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및 주의·경고

위반의 중대성 위반의 고의성	강	중	야
고의·중과실	중징계1) 의결 요구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경과실	경징계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	기타 조치4)

주 1) 중징계 : 해임, 파면, 정직

2) 경징계: 감봉, 견책

3)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4) 기타 조치 : 구두경고, 연구윤리 교육 의무 이수 등

제29조(관련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 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2. 그 밖의 관련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②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과제 또는 논문을 외부기관이 지원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 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1조(적용기준 등)

1. 표절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은 출간 당시의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이 출간 시보다 판정 시에 표절의혹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 었다면 판정 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표절행위에 대한 제재는 표절의혹을 받는 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것과 관계없이 가해질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